

경상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알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

1. 관련: 교원정책과-3201(2020. 05. 15.)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발령 후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임

※ 전 교원에게 반드시 공람 처리

3.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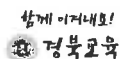
가. 유·초·중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나.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중등교육과 전영미 주무관(805-3379)

붙임 1. 교육부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부.

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 Q&A 1부. 끝.



경상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내]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안 의견 조회 및 행정예고

1. 관련

가. 교육부 교원정책과-1281(2021. 2. 10)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2.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주 15시간 이상)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 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환산(상근 삭제)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나. 제출처 및 제출기한

구분	제출처	제출기한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021. 2. 17.(수)
특수 및 고등학교, 각종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021. 2. 17.(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2021.2. 18.(목) 12:00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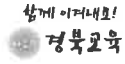
다. 문의처

1) 유·초등학교: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 허세영(054-805-3334)

2) 특수·중·고등학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경(054-805-3377)

3. 아울러 동 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 공고문 1부.
2.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경상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내]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사 포함) 사범계 가산연수 호봉정정 안내

1. 관련: 교원정책과-5225(2021. 6. 25.)
2.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사 포함) 사범계 가산연수 호봉정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호봉정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기존] 2020.5.15.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Q&A 7번에 의해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사범계 가산연수 적용

[정정]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과 상관없이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 인정(전문대 졸업 제외)

나. 대상

- 1) 2020. 5. 15.자 이후 발령받은 교사(휴직, 파견 중인 교사 포함)
- 2) 2020. 5. 15.자 이후 계약한 기간제 교사(기간제교원 및 전일제 강사)

다. 문의처

- 1) 유초등: 이상수 장학사(805-3334)
- 2) 중등: 이정아 장학사(805-3377)

※ 호봉정정과 관련된 보수지급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와 협의. 끝.

본 공문은 교육지원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발송합니다.

1. 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 결과

「수규정」 제9조제1항, 제2항 및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획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임용사항 (현재호봉→변경호봉)	임용일자
교사	(9)		호봉재획정 11호봉에 급함 (10호봉→11호봉)	
기간제 교사	(7)		호봉재획정 31호봉에 급함 (30호봉→31호봉)	
기간제 교사	(8)		호봉재획정 21호봉에 급함 (20호봉→21호봉)	